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제이비우리캐피탈㈜

2. 조치일 : 2026. 4. 15.

3. 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 1건, 개선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투자·여신업무 관련 내부통제 강화

제이비우리캐피탈㈜(이하 '회사')는 내규「내부통제규정」제21조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수행할 의무가 있고, 동 내규 제25조에 따라 준법감시 사항에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 점검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준법감시 업무 수행시 투자·여신 업무와 관련한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내규상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정기 점검 이행 주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준법감시 점검 항목에 투자·여신업무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항목을 반영하여 점검하고, 정기 점검 이행 주기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선사항

(1) 기업금융 리스크 검토 불합리

내규「기업금융 운영기준」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회사는 기업금융 취급 시 사전에 해당 자산에 대한 사업성과 기업리스크, 시장리스크 등 제반 리스크를 검토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신기술투자조합 출자를 통해 A비상장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 등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IPO를 주요 회수방안으로 정하였음에도 IPO시 적용되는 K-IFRS 가 아닌 K-GAAP 재무제표를 기초로 리스크를 검토함에 따라 IPO 제반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투자를 결정을 하였으며, 검사대상기간 중 영업본부장 전결로 처리한 신기술투자조합 투자 일부 건에 대해 승인신청서상 리스크 요인에 대한 검토 내용을 누락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소홀하였습니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IPO를 목표로 하는 비상장기업 투자 시 회계기준 전환(K-GAAP→K-IFRS)에 따른 재무구조 변동 가능성, 전환권 행사 시기 등 IPO 제반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승인신청서상 리스크 요인 검토 내용의 누락 여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 기업금융 사후관리 기준 및 절차 개선

내규「기업금융 운영기준」제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부서는 기업금융 관련 사후관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부실징후 발생시 영업부서에 통보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기업금융 관련 사후관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개별 영업부서가 명확한 기준 없이 사후관리 경과보고를 실시하고 있고, 계약조건의 불이행, 자금연체 등의 부실징후 발생 시에도 사후관리부서 차원의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기업금융 관련 사후관리 기준(경과보고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부실징후 발생 시 사후관리부서가 영업부서에 통보하는 등 모니터링 및 관리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